

食品衛生改正法律 및 同法施行令中 改正令(案) 主要內容

全 啓 然

〈保健社會部 衛生制度課長〉

70年代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經濟의 高度成長과 더불어 國民所得水準이 크게 向上됨에 따라 우리의 食生活方式에 있어서도 加工食品, 外食, 簡便食品 등의 依存度가 급격히 높아져 가고 있고 이에 따라 食品의 質, 營養, 衛生 등 安全性에 관한 消費者的 關心과 欲求는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對內的으로는 食品의 主要原料인 一部 農產物의 自給率이 극히 낮고 香料 등 大部分의 食品添加物은 內需基盤이 微弱하고, 製造技術水準이 낮아 이 分野의 資本投資가 貧弱하여 거의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며, 對外的으로는 先進諸國의 完製品과 農畜產物 등의 原料食品의 輸入開放壓力과 外國人の 資本, 技術 및 商標導入自由化 措置 등으로 우리나라 食品의 國際競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食品製造業體에서는 과감한 技術開發投資와 徹底한 品質管理 및 工程管理를 통하여 製品을 高級化하고 製造原價를 낮추어 國際競爭力を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對內外여전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자 政府에서는 지난 5月 10日 食品衛生法 改正法律을 公布하게 되었고 同改正法律이 今年 11月 10일부터 施行하게 됨에 따라 同法施行令 및 同法施行規則 改正作業을 進行하고 있다.

그 改正基本方向을 要約하면 첫째 衛生管理強化를 위한 措置로서 一部 業種의 營業施設基準을 合理的으로 調整하고 食品營業에 從事하는 營業主, 從事者, 衛生管理人, 營養土, 調理士에 대한 衛生教育制度를 補強하여 徹底한 食品檢查를 위한 制度를 補完하고 一部 營業의 種類와 營業範圍를 調整할 것이다.

둘째로 食品產業振興促進을 위하여 業種團體와 業界의 自律的인 研究·開發을 誘導하고자 食品工業協會를 法定團體로 하여 그 機能과 組織을 大幅 強化함과 同時に 食品研究所를 設立·運用하도록 하여, 食品振興基金을 造成하여 施設改修 등 食品衛生水準向上을 위한 事業을 遂行하거나 支援할 수 있는 細部運營節次를 定할 것이다.

셋째로 法令違反者에 대한 制裁의 實效性確保를 위하여 罰則 및 行政處分基準을 대폭 上向調整하고 課徵金의 부과 및 徵收에 관한 节次를 定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난번 公布된 食品衛生法 改正法律과 同法施行令中 改正令(案)의 主要改正內容을 紹介하니 食品에 關係하는 者는 미리 이에 對處할 수 있는 準備態勢를 갖추어 改正法令의 施行에 따른 混亂과 事業遂行上의 錯誤를 防止하고자 한다.

1. 改正 食品衛生法(1986. 5. 10 公布, 86.11.10 施行) 解說

(1) 主要骨子

① 販賣禁止對象 食品 및 添加物에 無許可營業者가 製造·加工한 것과 品目製造許可 없이 製造한 것을 추가함.

② 市·道 保健研究所와 같은 公共機關에 한하여 食品衛生檢查機關으로 지정하여 檢查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民間機關 등도 檢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 食品·添加物 등을 製造하는 营業을 하는 者는 그가 製造하는 製品이 基準·規格에 적합한지의 여부 檢查를 의무화함.

④ 营業許可 制限對象에 禁治產 또는 破産의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와 食品衛生法 위반으로 懲役刑의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한 者 등을 추가함.

⑤ 讓渡·相續 등에 의하거나 強制競賣 등에 의하여 营業施設을 引受한 者는 营業者的地位를 承繼하도록 하고 이를 1月 이내에 申告하도록 함.

⑥ 食品接客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와 食品衛生管理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营業開始前衛生敎育履修를 義務化함.

⑦ 公益上 또는 선량한 風俗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食品接客營業者の營業時間 및營業行為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⑧ 食品接客營業者는 傳染性疾患者 또는 風紀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者의 营業施設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⑨ 就業중인 調理士 및 營養士에 대한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補修敎育을 命할 수 있도록 함.

⑩ 食品營養 同業者組合 및 그 聯合會에自律指導員을 둘 수 있게 함.

⑪ 食品工業에 관한 調査·研究 등의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食品工業協會를 두도록 함.

⑫ 营業을 讓受한 者 등은 讓受전의 营業者에게 행하여진 行政處分의 效果를 承繼도록 함.

⑬ 無許可營業者, 許可가 取消된 者 또는 营業所閉鎖命令를 받은 者가 계속하여 营業을 하는 경우에 영업허가청은 당해 营業所를閉鎖하기 위하여 施設物 기타 营業에 사용하는 器具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封印 등直接強制措置를 행할 수 있도록 함.

⑭ 营業停止處分에 遵守하여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도록 함.

⑮ 集團給食所를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申告하도록 함.

⑯ 营業者의 营業施設改善을 위한 融資事業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食品振興基金을 設置함.

⑰ 罰則을 上向調整하여 食品衛生事犯을 嚴罰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가벼운 行政秩序 위반에 대하여는 過怠料에 處하도록 함.

(2) 主要改正內容 解說

① 無許可食品의 販賣禁止

지금까지는 腐敗·有毒·汚染·不潔등의 事由로 人體의 健康을 害할 憂慮가 있는 食品등을 販賣할 目的으로 採取, 製造, 輸入, 加工使用, 調理, 貯藏, 運搬, 陳列하지 못하도록 規制하여 왔으나 無許食品에 관해서는 그 製造業이 許可를 要하는 경우 그 製造만 禁止해 왔을 뿐 販賣禁止에 관해서는 規制하지 아니하였으나 改正法은 营業許可 또는 品目許可를 받고 製造해야 할 食品 또는 添加物을 許可 없이 製造한 경우, 이를 販賣하지 못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물론 現行 法體系上에는 따로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이 있어 無許可食品의 製造·販賣에 대한 處罰規定을 두고 있지만 一定規模 이상인 것을 要件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번 改正法은 許可를 要하는 모든 食品은一切 許可 없이 販賣를 目的으로 製造하거나 販賣할 수 없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無許食品規制는 훨씬 強化된 것임.

② 製品検査의 強化와 食品検査機關의 指定範圍擴大 等

現行法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등의 製品에 關하여 國民保健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檢查할 수 있다고 規定함으로써 臨檢, 收去検査와 마찬가지로 任意의 檢查만을 規定하고 있는데 반해 改正法은 製品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에 대하여는 檢查를 實施하여야 한다고 하여 必要의 檢查를 規定하여 製品検査를 強化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食品을 檢查하기 위해서는 公共機關中心의 食品衛生検査는 急增하고 있는 檢查業務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食品 등의 檢查에 必要한 施設을 갖춘 民間機關도 檢查機關으로 規定할 수 있도록 하여 食品 등의 檢查業務를 效率의으로 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檢查需要의 增加에 따른 不可避한 措置이기도 하지만 公共機關과 民間機關間의 善意의 競爭을 誘發할 것이므로 檢查業務의 改善에도 寄與할 것으로思料된다. 또한 이러한 他律的 機查보다는 製造業者 스스로 自己 製品의 基準・規格에 맞는지의 與否를 檢查하는 自律検査의 強化가 바람직하므로 이를 誘導하기 위하여 自家品質検査를 義務화하여 加工食品의 品質向上을 誘導하려는 것임.

③ 營業의 承繼와 行政制裁 處分效果의 承繼

現行法에는 營業의 承繼에 關한 規定이 없으나 改正法에서는 營業의 讓渡나 營業者의 死亡 또는 法人의 合併이 있는 때와 그 밖의 民事訴訟法, 競賣法, 破產法, 國稅徵收法 등의 法의 節次에 의하여 營業施設의 全部를 引受한 때의 營業의 承繼에 關하여 規定함으로써 營業施設의 全部를 引渡하고도 惡意의인 妨害로 引受者에게 營業者의 地位가 承繼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施設의 uth 등 財產上의 損失에 따른 紛爭 등 問題點이 있어 그와 같은 紛爭을豫防하고 去來의 安全을 圖謀하기 위하여 이러한 規定을 新設한 것이다. 또한 營業讓渡와 法人合併의 경우에 있어서 從前의 營業

者에 대한 行政制裁處分效果를 讓受人 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에게 承繼시키면서 그 讓受人 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에게 善意의 抗辯權을 認定하고 있다. 이는 去來의 安定과 行政制裁의 實效性의 확보를 調和시키려는데 目的이 있는 것임.

④ 食品衛生團體 機能活性化

現在 食品衛生關係 營業의 各種 同業者團體가 있으나 이들은 民法 第32條에 의하여 設立되어 食品衛生法의 規制를 받아 오지 아니하였으나 改正法에서는 營業施設의 改善, 教育訓練, 調査・研究, 自律指導, 保健社會部長官이 委託하는 調査・研究 等의 事業을 行하게 하기 위하여 同業者組合을 設立할 수 있도록 한 것임.

⑤ 建築物의 所有者에 대한 施設改修命令

營業者에 대하여 施設基準에 未達한 營業施設의 경우 그 改修를 命할 수 있음은 現行法과 다르지 않으나 營業建物의 所有者와 營業者가 다를 경우 그 所有者에 대하여 命令에 의한 施設改修에 최대한 協助하여야 하도록 함과 同時に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不得己한 事由가 있을 경우에 그 所有者에 대하여 直接 그 施設의 改修를 命할 수 있도록 規定한 것으로서 이는 營業者와 建物所有者가 다른 경우 또는 共同使用便所의 경우 建物所有者が 아니면 改修할 수 없는 問題點을 一部 解消한 것임.

⑥ 課徵金과 食品振興基金

現行法에는 두고 있지 않는 課徵金制度를 新設하여 營業停止處分을 할 事案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營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1千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違反事項이 國民保健衛生上 重大한 경우가 아닌 事項으로서 比較的 輕微한 營業停止處分 對象인 경우의 營業停止處分은 營業者의 人的, 物的資源의 遊休를 强要하게 되며 이는 國民經濟에도 나쁜 影響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金錢負擔으로 代置한

다면 그個人에게는 물론 國民經濟 全般에도 有益한 制度가 될 것이다. 다만, 違反者에 대하여 課徵金에 의한 不利益處分을 통하여 違反의 是正 내지 再發防止라는 行政目的이達成될 수 있도록 制度的措置를 講究할 方針임.

한편 이 課徵金은 食品振興基金의 主된 財源이 될 것이며 이 基金은 食品關係의 營業施設改善, 衛生에 관한 教育, 弘報, 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에 관한 調查·研究事業 등 우리나라의 食品衛生水準向上에 寄與하게 될 重要한 事業의 基金이 될 것이므로 그 財源의 一部는 國庫에서도 出捐할 수 있는 法的 根據를 마련하였고, 課徵金에 대해서는 업종별 위반 정도 등에 따른 細部處分基準을 大統領令으로 定할 方針임.

⑦ 罰則 強化

改正法은 現行法에 비하여 罰則을大幅 強化하고 있다. 그一例로 腐敗·有毒·污染·不潔로 인하여 人體의 健康을 해할 憂慮가 있는 食品을 販賣하거나 販賣할目的으로 生產하는 등 食品을 取扱하였을 경우 現行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함에 비하여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도록大幅 強化하였다. 이는 罰則基準을 強化하여 不法營業 根絕을 위한 意志의 表現으로서 이는 充分한 一線人力이 確保되어 빠짐없이 團束되고 處罰되지 않으면 法이 選擇的 適用이라는 國民에게 納得되지 않는 不滿要因이 될 것이므로 法의公正한 執行을 위하여 指導·團束에 萬全을 期할 것임.

2. 食品衛生法 施行令中

改正令(案)의 主要改正內容

(1) 業種調整

① 도시락 製造業種의 新設

現在 도시락은 大衆飲食店營業의 許可로 大量流通販賣되고 있으며 製造日時가 表示되지

아니하여 衛生管理上 취약성이 있어 國民保健衛生上 問題點이 있다고 判斷되어 食品製造業種의 하나로 新設하여 製造管理 및 製品表示方法을 具體化함으로써 流通上의 衛生管理가 可能도록 하여 도시락產業發展을 圖謀함은 물론 觀光客 등 消費者에 대한 便益을 提供하려는 것임.

② 食品照射處理業의 營業許可基準 具體化

安全性이 立證되며 食品의 저장 및 살균에 탁월한 效果가 있고 世界 32個國 73食品群에 活用이 보편화된 食品의 放射線 照射處理의 必要性이 있다고 判斷되어 지난해 業種을 新設하였으나 營業許可 施設基準, 照射對象食品 등 營業에 關한 具體的 基準이 定하여 있지 아니한 關係로 그간 事實上 許可管理가 不可能하여 이의 基準을 定하므로서 食品의 저장 수명연장, 살균 등의 효과로 食糧資源의 損失을 줄이고 食品의 安全性을 높이려는 바 있음.

(2) 食品 등 品目許可制度改善

加工食品과 이를 싸는 容器, 包裝에 대하여 品目마다 許可를 받은 후 製造·販賣토록 되어 있어 食品原料를 결단·분쇄하는 單純加工食品과 衛生管理上 問題가 없는 一部 食品에 있어서도 品目別로 許可管理에 따른 業所의 不便과 行政의 非能率要因이 있다고 判斷되어 이러한 製品에 대하여는 品目許可對象에서 除外시키고 向後 品質管理가 우수한 製品에 대하여도 점차 확대 실시할 方針이며 品目許可除外食品의 違反行爲에 대하여는 營業

〈表〉 品目許可 除外對象業種

區 分	業 種
食品製造·加工業	아이스크림, 두부류, 젤임식품류, 식용유지, 다류, 편류, 당류, 조미식품, 건포류제조업 및 식품가공업
其他營業	유처리업 및 식품용기·포장지등 제조업

許可取消 등 品目許可對象食品에 비하여 보다
強力한 行政處分으로 管理할 方針이며 現在
品目許可對象中 品目許可 對象에서 除外코자
하는 業種은 위의 〈表〉와 같다.

(3) 集團給食所 管理制度改善

現行規定上 集團給食所는 1회 50人 이상 從事者의 自體給食所에 대한 調理士, 營養士 履傭義務에 관한 規定만 있을 뿐 衛生管理 등에
관한 規定이 없어 集團食中毒事故 發生의 위
험 등 衛生上 취약성이 있어 앞으로는 이들
給食所는 管轄 市·郡·區廳에 申告토록 하여
衛生點檢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4) 食品工業協會의 組織 및 機能 活性化策 마련

現行制度上 食品工業協會는 民法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으로서 構成會員은 任意로 加
入하고 設立目的도 單純한 會員間의 親睦圖謀
일 뿐 食品產業發展을 위한 實質的 事業遂行
이 不可能한 實情이므로 協會의 組織 및 機能
을 活性化하여 食品研究, 檢查, 各種 情報의
수집 및 보급 등 加工食品產業發展을 위한 民
間團體로 育成하고자 지난 5月 10日 公布된
改正法律에 法定團體로 制度화하였고 그에 따
라 지난 7月 4日 同協會 食品研究所를 開所하여
運營中에 있고 이번에 改正하고자 하는 施
行令에서는 同協會 運營에 關한 細部節次를
定할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會員의 範圍

(가) 當然會員 : 前 3年間 年平均 賣出額이 10
億원 이상인 食品製造業體

(나) 任意會員 : 中小企業協同組合 會員業體 등
Food製造業體 및 Food製造業中小企業協同組合

② 議決 및 執行

(가) 議事決定 : 50人內의 業種別代表로 構成
하는 運營委員會에서 行함.

(나) 執行機關으로서는 會長, 副會長, 理事,
監事を 두고 任員의 數와 任期는 定款에서 定
하며 會長은 常任으로 함.

(5) 課徵金制度의 導入

課徵金은 營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處分廳
이 부과한 一定額의 課徵金을 行政機關에 納
付하여 行政處分이 終結되도록 이번에 新設되
는 制度로서 細部運營節次를 定하려는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課徵金부과대상 위반行爲는 國民保健에
重大한 영향이 없는 事項에 대해 부과한 方針
이며 細部基準은 同法施行規則에서 定할 것임.

② 課徵金算定基準은 違反行爲別, 業種別,
年間賣出額規模別로 定함.

③ 課徵金處分은 營業停止處分時 청문要求
와 함께 納付期限을 明示하여 課徵金額을 通
報하여 期限內 納付하면 營業停止處分이 終結
되도록 하며 違反事項의 是正은 課徵金부과通
知와 同時に 期限을 定하여 是正토록 한 것임.

(6) 食品振興基金의 造成 및 運用

① 基金運營委員會 設置

基金豫算의 決算, 事業우선순위決定 등 基
金事業運營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保社部次官을 委員長으로 하고 經濟企劃院,
內務部, 財務部의 關係局長, 業界代表 3人,
專門家 3人 등 11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
는 委員會를 設置함.

② 基金의 運用節次

每年度別로 保社部가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事業計劃作成指針을 市·道 및 該當團體에 示
達하고 市·道 團體支部는 事業計劃을 作成,
該當 市·道의 承認을 받아 保社部에 提出하
면 保社部는 當該年度의 基金運用規模 및 事
業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事業計劃을 確定하여 施行토록 하고 事
後管理는 管轄行政官廳과 團體에 行함. ■■■